

시행일:2019.02.21. 입력자:강다경 확인자:원대희

## 유-헬스케어연구소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‘유-헬스케어연구소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연구소의 명칭은 유-헬스케어연구소(이하 ‘연구소라 한다’)라 부른다.

**제3조(소재)**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 메디컬캠퍼스 내에 둔다.

**제4조(연구소의 목적)** 본 연구소는 헬스케어 분야 신기술의 연구개발과, 실용화 및 인력 양성,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5조(연구소의 사업)** 본 연구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HT(Health Technology)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 공동 연구 개발
2. 스마트/유-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운영 지원
3. 메디컬/바이오/헬스 인포메틱스 분야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

## 5-1-35~2 제5편 부설연구기관

4.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
5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### 제 2 장 조 직

**제6조(소장)** ①본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7조(직무)**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본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#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8조(설치)** 본 연구소에는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**제9조(조직)**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10조(권한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**제11조(소집과 회의)**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할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## 제 4 장 재 정

**제12조(경비 및 연구비)** ①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비는 센터지원비, 용역사업비, 정부보조금, 기부금 및 기타의 비용으로 충당한다.

②본 연구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 용역수주에서 일정액을 연구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**제13조(회계년도)**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가천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.

## 제 5 장 보 칙

**제14조(운영세칙)**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